

『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아동의 원가족 복귀 조치와 함께 재학
대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
에 따라 보호조치·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, 보호대상아동을
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의

무화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·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□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 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